

2023년 제8차 이사회 회의록

구 분	이 사	감 사
임원정수	7 인	2 인
재적임원	7 인	2 인
참석임원	5 인	0 인

1. 일시 : 2023년 8월 8일(화) 14:00 (회의소집 통보일 : 2023년 7월 31일)

2. 장소 : 신한대학교 의정부캠퍼스 믿음관(본관) 2층 회의실

3. 임원 출 · 결 사항

○참석 임원

- 이사(5인) : 변도윤, 김관목, 강성중, 박정호, 이성희

○불참 임원

- 이사(2인) : 김종효, 김문수

- 감사(2인) : 지후식, 배시영

4. 심의 · 의결 안건

1) 신한대학교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

2) 법인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신한대학교 망월사역 역명부기 사용 재계약에 따른 이행보증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

5. 보고 안건

1) 수익사업에 관한 주요사항

2) 법인 상임이사 및 직원 보수에 관한 사항

6. 회의 내용

[개회선언]

이사장 변도윤: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에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형성 법인사무국장님께서도 성원 보고 부탁드립니다.

사무국장 장형성: 금일 이사회는 재적위원 7명 중 5명 참석하였음을 보고합니다.

이사장 변도윤: 이에 성원이 되었으므로 개회를 선언합니다.

간서명	이사 변도윤	이사 김관목	이사 강성중
-----	--------	--------	--------

[전차 회의록 보고]

이사장 변도윤 : 전차 회의록이 합법적이고 적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대표 간서명자에 의하여 확인되었음을 법인사무국 국장으로 하여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법인사무국 국장은 전차 회의록을 낭독하다 >

이사장 변도윤: 전차 회의록이 합법적이고 적정하게 작성되었으므로 접수해도 되겠습니까?

이 사 김관목 : 회의록에 어떠한 상이한 점이 있다거나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 참석이사 전원 전차 회의록을 접수하자고 하다 >

이사장 변도윤 : 전차 회의록은 수정 없이 접수되었음을 선언하다.

[심의 · 의결 사항]

< 제1호 안건 : 신한대학교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

이사장 변도윤: 제1호 안건으로 신한대학교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의논하기에 앞서 사립학교법 제16조 제2항에 의거하여 제적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종 이사님은 잠시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종 이사 회의실에서 퇴장하다.>

이사장 변도윤: 본 안건은 법인사무국 장형성 국장님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장형성: 본 안건은 신한대학교 경영에 관한 사항으로 신한대학교 총장의 임기가 2023.08.2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정관 제39조에 의거하여 차기 총장을 이사회에서 선임하고자 합니다.

사무국장 장형성: 현 총장의 업적과 성과에 대해 설명하다.

이사장 변도윤: 지난 임기동안 여러 가지 발전을 이루어낸 업적 또한 인정하며, 이전 업적 및 성과에 대해 간략히 언급하다. 대내외 환경변화를 비롯하여 중요한 시기를 맞이하고 있으므로 대학의 총장 자리를 한시라도 공석으로 둘 수 없음을 설명하다.

이 사 김관목: 동의합니다. 강성종님의 성과를 인정하며, 강성종님이 신한대학교 총장으로 책임자임을 말하다.

이 사 박정호: 재청합니다.

이사장 변도윤: 총장의 임기 및 연봉계약 사항에 대한 심의도 필요함을 말하며, 현재 총장의 연봉 및 계약조건에 대하여 질의하다.

사무국장 장형성: 신흥학원 정관 제39조3항에 의거하여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

간서명	이사 변도윤	이사 김관목	이사 박정호
-----	--------	--------	--------

음을 설명하다. 현재 연봉금액에 대하여 설명하며 가족수당, 직위수당 및 맞춤형 복지비 등은 별도로 지급하고 있음을 설명하다.

이사장 변도윤: 대학이 긴축재정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별도 연봉 인상은 없으며, 현재와 동등한 대우로 4년 중임하는것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다.

이 사 김관목: 동의하다.

이 사 이성희: 재청하다.

<안건에 대하여 이사장이 이의가 있는지 문의하다>

<참석이사 전원이 찬성의사를 거수로 표시하다>

이사장 변도윤: 참석이사 전원 찬성으로 2023.08.21.부터 4년 동안 강성중님을 현재와 동일한 대우로 신한대학교의 총장으로 중임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언하다.

<강성중 이사 의결 후 회의실로 재입장하다.>

< 제2호 안건 : 법인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이사장 변도윤: 제2호 안건으로 법인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어서 장형성 사무국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장형성: 본 안건은 법인 정관 개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교육부의 학교법인 운영 업무(임원) 안내서가 6월 1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임용권 위임하며, 대학의 요청으로 일반직 정원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이에 정관으로 정하고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합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반직 정원 증원 관련해서는 최승구 총무처장이 추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이사들 배부된 자료를 보며 논의를 하다>

총무처장 최승구: 현재 대학교계 일반직원 수 에 대해서 설명하다. 증원 사유로는 무기계약제 직원 등의 능력을 극대화하며, 사기 진작을 위하여 필요한 일임을 추가 설명하다.

이사장 변도윤: 이사님들께서는 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 변도윤: 무기계약직과 일반직 차이점에 대해 추가 설명 요청하다.

총무처장 최승구: 차이점이 없으며, 현재까지 감축 인원 수 에 대해서 추가 설명하다.

<각 이사들 논의하다>

이 사 강성중: 계약직이면 직원이 계속적으로 변경됨에 따라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있음을 설명하다. 무기계약직과 일반직과의 처우가 다르지 않고, 능력 또

간서명	이사 변도윤	이사 김관목	이사 이성희
-----	--------	--------	--------

한 다르지 않으므로 실력이 있는 무기계약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함이 어떠한지 제안 하다.

이사장 변도윤: 무기계약직과 일반직으로 전환했을 때 인건비의 차이는 없는지 문의하다.

이 사 최승구: 무기계약직에서 일반직으로 신분 전환이 됨으로써 인건비의 차이는 없음을 추가 설명하다.

이 사 김관목: 동의합니다. 이에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제안하다.

이 사 이성희: 동의하다.

이 사 강성중: 재청하다.

<안건에 대하여 이사장이 이의가 있는지 문의하다>

<참석이사 전원이 찬성의사를 거수로 표시하다>

이사장 변도윤: 참석이사 전원 찬성으로 제2호 안건인 법인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은 불임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언하다.

< 제3호 안건 : 신한대학교 망월사역 역명부기 사용 재계약에 따른 이행보증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 >

이사장 변도윤: 제3호 안건으로 신한대학교 망월사역 역명부기 사용 재계약에 따른 이행보증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법인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어서 최승구 총무처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처장 최승구: 본 안건은 신한대학교 망월사역 역명부기 사용 재계약에 따른 이행보증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이사들 배부된 자료를 보며 논의를 하다>

이사장 변도윤: 이사님들께서는 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이사들 논의하다>

이 사 이성희: 동의합니다. 이에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제안하다.

이 사 강성중: 동의하다.

이 사 김관목: 재청하다.

<안건에 대하여 이사장이 이의가 있는지 문의하다>

<참석이사 전원이 찬성의사를 거수로 표시하다>

이사장 변도윤: 참석이사 전원 찬성으로 제3호 안건인 신한대학교 망월사역 역명부기 사용 재계약에 따른 이행보증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이 원안대

간서명	이사 변도윤	이사 김관목	이사 이성희
-----	--------	--------	--------

로 의결되었음을 선언하다.

(1) 이행보증보험 가입 사유: 망월사역 역명부기 사용 재계약에 따라 계약사항을 이행하고자 함.

(2) 계약내용

계약내용	사용기간	사용료
신한대학교 망월사역 역명부기 사용 재계약	*23.07.01.~24.06.30.(1년)	금52,688,940원 VAT포함

(3) SGI서울보증보험 가입내역

계약자	보험가입금액	보험가입기간	보험료	보증내용
보험계약자: 신한대학교 피보험자: 한국철도공사	금97,340,000원	*23.07.01.~24.08.31. (1년2개월)	금1,930,170원 VAT포함	계약종료 후 역명부기 원상복구에 대한 이행보증

※ 사용기간과 보험가입기간이 상이한 사유는 역명부기 원상복구 작업기간을 고려하여 사용기간보다 2개월 연장하여 제출할 것을 요청받음.(한국철도공사측 요청)

[보고사항]

1. 법인 수익사업에 관한 주요사항

-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보고사항을 접수하다.

2. 법인 상임이사 및 직원 보수에 관한 사항

-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재정비 및 추가 논의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며, 다음 이사회 때 보고사항이 아닌 심의안건으로 상정해 줄 것을 요청하다.

[폐회선언]

이사장 변도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 이사회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서명은 저와 김관목 이사님, 박정호 이사님께서 대표로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사회를 폐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서명	이사 변도윤	이사 김관목	이사 박정호
-----	--------	--------	--------

위의 회의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이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사장과 출석한 이사
전원이 다음과 같이 서명하다.

2023. 08. 08.

학교법인 신흥학원

이사장

변도윤

이사

김관목

이사

강성종

이사

김종효

이사

박정호

이사

김문수

이사

이성희

감사

지후식

감사

배시영



간서명	이사 변도윤	이사 김관목	이사 박정호
-----	--------	--------	--------

붙임 1 법인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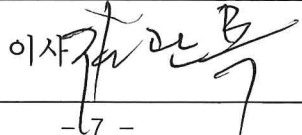
□ 관련근거: 「사립학교법」 제53조의2(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용)

□ 정관변경 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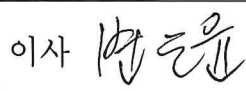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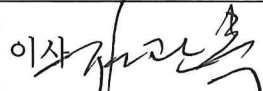
- 일반직 정원 증원
-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해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2항을 근거로 각급학교의 임용권을 법인에서 대학으로 위임하고자 함.

□ 신·구조문 대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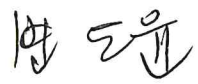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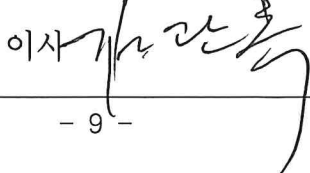
현 행	개 정(안)
제39조(임용) ① ‘임용’이란 신규채용, 재임용, 의원면직, 당면면직, 전보, 겸임, 파견, 휴직, 정계, 직위해제 및 복직을 말한다.<신설 2023.06.13.> ② 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한다. 이 경우 이 법인 이사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가 있는 자를 학교의 장에 임명할 경우에는 이사정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임명한다. <개정 2008. 2. 18., 2013. 8. 8., 2016. 6. 21., 2020. 9. 29.> 1. 배우자 2.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다만, 대학교육기관의 장(이하 “총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임기 중에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다만, 중등학교의 장은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개정 2013. 8. 8.> ④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경우 학교의 장 이외의 교원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한다. <개정 2016. 6. 21.> ⑤ 대학교육기관(이하 “대학교”라 한다)의 경우 총장 이외의 교원(이하 “대학교원”이라 한다)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한다. 다만, 정년까지 임용할 교원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정년보장교원 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제39조(임용) ① ‘임용’이란 신규채용, 재임용, 승진, 전보, 겸임, 파견, 강임, 휴직, 직위해제, 정직, 강등,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② 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한다. 이 경우 이 법인 이사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가 있는 자를 학교의 장에 임명할 경우에는 이사정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임명한다. 1. 배우자 2.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다만, 대학교육기관의 장(이하 “총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임기 중에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다만, 중등학교의 장은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④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경우 학교의 장 이외의 교원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한다. 다만, 휴직 및 복직에 관한 사항은 각급학교의 장에게 위임하되, 이 경우 각급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대학교육기관(이하 “대학교”라 한다)의 경우 총장 이외의 교원(이하 “대학교원”이라 한다)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한다. 다만, 정년까지 임용할 교원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

간서명	이사 	이사 	이사 
-----	--	---	--

현 행	개 정(안)
거쳐야 하며, 정년보장 교원의 정수는 교원인사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3. 8. 8., 2016. 6. 21.> ⑥ 학교법인은 대학 교원 임용권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총장에게 위임한다.<신설 2023.06.13.> 1. 신한대학교 교원의 신규채용(재임용), 의원면직, 당연면직, 전보, 겸임, 파견, 휴직, 직위해제, 복직, 파면, 해임, 정직, 강등, 감봉, 전책 ⑦ 대학의 부총장·처장·학장·대학원장 및 중등학교의 교감의 보직은 학교의 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하며, 그 밖의 교직원의 보직은 당해 학교의 장이 보한다. <개정 2009. 6. 25., 2013. 8. 8.> ⑧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권자가 교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임용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21.> ⑨ 대학교의 강사 및 비전임 교원은 학교의 장이 이를 임용하고 이사장에게 보고하되, 임용기간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6. 6. 21., 2018. 1. 31., 2023. 3. 23.> ⑩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2 제6항에 따라 정년 전에 임기가 끝나는 중등학교의 장으로서 교사로 근무할 것을 희망하는 사람(교사자격증을 가진 사람만 해당한다)은 수업 담당능력과 건강 등을 고려하여 교사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19. 6. 20.> [전문개정 2007. 12. 21.]	에 앞서 정년보장교원 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하며, 정년보장 교원의 정수는 교원인사규정으로 정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권한은 총장에게 위임하되, 이 경우 총장은 지체 없이 이를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대학교 교원의 임용 및 정년보장에 관한 사항 2. 대학교 부총장, 대학원장, 학장, 실·처장·본부장과 그밖의 교원의 보직 임면에 관한 사항 3. 대학교의 강사 및 비전임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 ⑦ 고등학교 이하 학교의 경우 교감의 보직은 각급 학교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하며, 그 밖의 교직원의 보직은 당해 학교의 장이 정한다. ⑧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권자가 교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임용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⑨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2 제6항에 따라 정년 전에 임기가 끝나는 중등학교의 장으로서 교사로 근무할 것을 희망하는 사람(교사자격증을 가진 사람만 해당한다)은 수업 담당능력과 건강 등을 고려하여 교사로 임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 12. 21., 2023.08.00]
제39조의2(교원의 계약제 임용 등) ① 제39조제4항에 따른 대학교원의 임용은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계약조건을 정하여 행한다. <개정 2007. 12. 21., 2009. 6. 25., 2012. 8. 22., 2013. 8. 8., 2019. 10. 30.> 1. 근무기간 가. 교수 : 정관 제46조의2에 규정하는 정년까지의 기간.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나. 부교수, 조교수 :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다. 강사 : 1년 이상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긴급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는 경우 1년 미만의 기간) 2. 급여 : 직무의 성격·곤란성과 책임의 정도 및	제39조의2(교원의 계약제 임용 등) ① 제39조제5항에 따른 대학교원의 임용은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계약조건을 정하여 행한다. <개정 2007. 12. 21., 2009. 6. 25., 2012. 8. 22., 2013. 8. 8., 2019. 10. 30., 2023.00.00.> 1. 근무기간 가. 교수 : 정관 제46조의2에 규정하는 정년까지의 기간.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나. 부교수, 조교수 :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다. 강사, 비전임교원 : 1년 이상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긴급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는 경우 1년 미만의 기간) 2. 급여 : 직무의 성격·곤란성과 책임의 정도 및

간서명	이사 	이사 	이사 
-----	--	--	--

현 행	개 정(안)
직위·직무 등급별로 구분하고, 개별업적 및 성과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3. 근무조건 : 교수시간 및 소속 학과 등에 관한 사항 4. 업적 및 성과약정 : 연구실적·논문지도·진로 상담·학생지도 및 학교공헌업적 등에 관한 사항 5. 재계약 조건 및 절차 : 근무기간 종료 후 다시 임용되는 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7. 자격기준·임용기준·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심사 방법·재임용절차·면직사유·임용기간(1년 미만의 예외 적용기간을 포함한다) 및 임금 등의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은 대학의 인사규정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07. 12. 21.>	직위·직무 등급별로 구분하고, 개별업적 및 성과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3. 근무조건 : 교수시간 및 소속 학과 등에 관한 사항 4. 업적 및 성과약정 : 연구실적·논문지도·진로 상담·학생지도 및 학교공헌업적 등에 관한 사항 5. 재계약 조건 및 절차 : 근무기간 종료 후 다시 임용되는 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7. 자격기준·임용기준·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심사 방법·재임용절차·면직사유·임용기간(1년 미만의 예외 적용기간을 포함한다) 및 임금 등의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은 대학의 규정으로 정한다. ② 삭제 <2007. 12. 21.>
제39조의4(중전 규정에 의하여 기간제로 임용되어 2002년 1월 1일 현재 재직 중인 교원의 임용) ① (생략) ② 이사장은 근무기간이 종료되는 대학교원의 신청에 따라 다시 임용할 것인지의 여부를 심사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에 관한 기준과 세부적인 절차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 시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교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⑤ 이사장은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거쳐 근무기간 종료일 2월 전까지 해당 대학 교원에게 다시 임용할 것인지의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⑥ 총장은 대학교원을 대상으로 교육 및 연구 등에 관한 업적을 평가한다. <개정 2013. 8. 8.> ⑦ 이사장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업적평가 결과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⑧ 총장은 업적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개정 2013. 8. 8.>	제39조의4 삭제 <2023.00.00.>

간서명	이사 	이사 	이사 
-----	--	---	--

현 행	개 정(안)
제39조의5(특별채용)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대학 교원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이사장은 특별채용 할 수 있다. <개정 2013. 8. 8.> 1. ~ 5. (생략)	제39조의5(특별채용)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대학 교원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총장은 특별채용 할 수 있다. <개정 2013. 8. 8., 2023.00.00.> 1. ~ 5. (생략)
제45조(보수) 교원의 보수는 직무의 성격·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맞도록 직급별·직위별 또는 직무등급별로 정하되, 일반의 표준생계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보수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9. 6. 25.> [전문개정 2007. 12. 21., 2013. 8. 8.]	제45조(보수) 교원의 보수는 직무의 성격·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맞도록 직급별·직위별 또는 직무등급별로 정하되, 일반의 표준생계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학교의 보수규정으로 정하되,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없이 이를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 6. 25., 2023.00.00.> [전문개정 2007. 12. 21., 2013. 8. 8.]
제55조(교원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교원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 12. 29., 2013. 8. 8., 2022. 9. 30.> ② ~ ⑤ 까지(생략)	제55조(교원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교원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대학교원의 징계위원회는 대학에 따로 두며 구성과 절차는 대학교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1. 12. 29., 2013. 8. 8., 2022. 9. 30., 2023.00.00.> ② ~ ⑤ 까지(생략)
제65조(임용) ① 일반직원의 임용은 임용권자가 공개채용·전형 또는 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2. 8. 22., 2022. 9. 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에 있어서 그 시험 과목·방법·절차 등에 관하여는 따로 인사규칙으로 정하며, 근속승진은 중·고등학교 직원에 한한다. ③ 일반직원은 이사장이 임용하되, 학교소속 일반직원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이 있어야 한다. ④ 삭제 <2012. 12. 28.>	제65조(임용) ① 일반직원의 임용은 임용권자가 공개채용·전형 또는 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에 있어서 그 시험 과목·방법·절차 등에 관하여는 따로 인사규칙으로 정하며, 근속승진은 중·고등학교 직원에 한한다. ③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일반직원은 이사장이 임용하되 당해 학교장의 제청이 있어야 한다. 다만, 휴직 및 복직에 관한 사항은 각급학교의 장에게 위임하되 이 경우 각급학교의 장은 지체없이 이를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대학교의 일반직원은 학교의 장이 임용하되,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없이 이를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3.00.00.]
제69조(징계 및 재심청구) ① 일반직원의 징계는 사립학교의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하되, 일반직원 징계위원회는 법인에 따로 두어야 하며,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제69조(징계 및 재심청구) ① 일반직원의 징계는 사립학교의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하되, 일반직원 징계위원회는 법인에 두어야 하며,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간서명	이사 	이하리/리복 	이사 
-----	--	---	--

현 행	개 정(안)																																
거쳐 일반직원징계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3. 8. 8.> ② 일반직원의 재심청구를 위하여 법인에 일반직원 재심위원회를 두되,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일반직원재심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3. 8. 8.>	일반직원징계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② 일반직원의 재심청구를 위하여 법인에 일반직원 재심위원회를 두되,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일반직원재심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3. 8. 8.>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학 일반직원 징계위원회 및 재심위원회는 대학에 두며,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대학교의 일반직원징계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3.00.00.]																																
별표2 학교 일반 직원 정원 <table border="1"> <tr><td>총 계</td><td>149 명</td></tr> <tr><td>1. 대학교계</td><td>141 명</td></tr> <tr><td>일 반 직</td><td>141 명</td></tr> <tr><td>2. <삭 제></td><td></td></tr> <tr><td>3. 고등학교계</td><td>4명</td></tr> <tr><td>일 반 직</td><td>4명</td></tr> <tr><td>4. 중학교계</td><td>4명</td></tr> <tr><td>일 반 직</td><td>4명</td></tr> </table>	총 계	149 명	1. 대학교계	141 명	일 반 직	141 명	2. <삭 제>		3. 고등학교계	4명	일 반 직	4명	4. 중학교계	4명	일 반 직	4명	별표2 학교 일반 직원 정원 <table border="1"> <tr><td>총 계</td><td>163 명</td></tr> <tr><td>1. 대학교계</td><td>155 명</td></tr> <tr><td>일 반 직</td><td>155 명</td></tr> <tr><td>2. <삭 제></td><td></td></tr> <tr><td>3. 고등학교계</td><td>4명</td></tr> <tr><td>일 반 직</td><td>4명</td></tr> <tr><td>4. 중학교계</td><td>4명</td></tr> <tr><td>일 반 직</td><td>4명</td></tr> </table>	총 계	163 명	1. 대학교계	155 명	일 반 직	155 명	2. <삭 제>		3. 고등학교계	4명	일 반 직	4명	4. 중학교계	4명	일 반 직	4명
총 계	149 명																																
1. 대학교계	141 명																																
일 반 직	141 명																																
2. <삭 제>																																	
3. 고등학교계	4명																																
일 반 직	4명																																
4. 중학교계	4명																																
일 반 직	4명																																
총 계	163 명																																
1. 대학교계	155 명																																
일 반 직	155 명																																
2. <삭 제>																																	
3. 고등학교계	4명																																
일 반 직	4명																																
4. 중학교계	4명																																
일 반 직	4명																																
<신 설>	<부 칙> 이 정관은 2023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간서명	이사 	이사 	이사 
-----	--	---	--